

커미셔너의 명령 상 호소 자가 승리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명령에는 구제책이 명시됩니다.

고용 관련 차별 사건인 경우, 구제책에는 정책 및/또는 관행의 변경, 해당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손실된 밀린 급여(이자 또는 수당 포함) 및/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관련 차별의 경우, 구제책에는 정책 및/또는 관행의 변경, 부동산의 임대(렌탈 또는 리스) 또는 판매, 서비스의 제공,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 배상 및/또는 민사 벌금 및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고 (Appeals)

호소자 또는 응답자는 커미셔너의 명령 날짜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에 뉴욕주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인권 분과 사무소 (Division of Human Rights Offices)

Headquarters - The Bronx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Y 10458
전화: (718) 741-8400

올버니 (Albany)
Agency Building 1, 2nd Floor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0
전화: (518) 474-2705

빙햄튼 (Binghamton)
44 Hawley St., Room 603
Binghamton, NY 13901
전화: (607) 721-8467

브루클린 (Brooklyn)
55 Hanson Place, Room 304
Brooklyn, NY 11217
전화: (718) 722-2385

버팔로 (Buffalo)
65 Court Street, Suite 506
Buffalo, NY 14202
전화: (716) 847-7632

롱아일랜드 - 서포크 (Long Island Suffolk)
250 Vet. Memorial Hwy., Suite 2B-49
Hauppauge, NY 11788
전화: (631) 952-6434

롱아일랜드 - 나소 (Long Island Nassau)
50 Clinton Street, Suite 301
Hempstead, NY 11550
전화: (516) 539-6848

맨하탄 (Manhattan)
163 West 125th Street, 4th Floor
New York, NY 10027
전화: (212) 961-8650

**성희롱 문제 사무소
(Office of Sexual Harassment Issues)**
55 Hanson Place, Room 900
Brooklyn, NY 11217
전화: (718) 722-2060

로체스터 (Rochester)
One Monroe Square,
259 Monroe Ave., Suite 308
Rochester, NY 14607
전화: (585) 238-8250

시라큐즈 (Syracuse)
333 East Washington St., Room 543
Syracuse, NY 13202
전화: (315) 428-4633

웨체스터제 (Westchester)
전화: (914) 989-3120



**Division of
Human Rights**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과 뉴욕주 인권 분과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ONE FORDHAM PLAZA
BRONX, NEW YORK 10458
1-888-392-3644
TTY: 718-741-8300
WWW.DHR.NY.GOV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1945년, 뉴욕주 의회는 미국 내 최초의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인권법(Human Rights Law)" 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나이, 신념, 인종, 피부색, 성적 기호, 출신 국가, 혼인 상태, 가정 폭력 피해자 신분, 장애, 군 복무 신분, 체포 기록, 유죄 판결 기록, 유전적 소인, 가족 상태(주택 분야에 한함) 등을 근거로 고용, 주택, 신용 대출, 공공 편의 시설, 의용 소방 활동, 비종교 교육 기관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이들 특성 또는 특징 중 하나에 근거한 차별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한 충분히 고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체의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고발 양식을 제출하거나, 인권법에 의거한 일체의 법적 절차 중 증언하거나 도왔다든 이유로 개인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뉴욕주 인권 분과 ("DHR" 또는 "본 분과")는 차별 행위를 당한 개인에 의한 고발 사건의 조사, 심리 개최 및 해결 등을 통해 뉴욕주 주민들을 위한 이 중요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발

일단 고발 건이 접수되고 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는 서신 교환, 전화 대화, 고발된 차별 행위 발생 현장 방문, 사실 심리, 또는 이러한 방법 중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역할은 사건의 사실을 수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수사관은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거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본 분과는 수사 진행 중에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 분과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차별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된 경우,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된 경우,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과 함께) 본 분과에 고발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분과 홈페이지(www.dhr.ny.gov)를 방문해 고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한 다음, 공중인 앞에서 서명해서, (우편으로, 또는 직접) 본 분과의 브롱스(Bronx) 사무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본 분과 브롱스 사무소 또는 본 분과 다른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직접 고발 양식.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책자 끝 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 사무소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또는,
- 본 분과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해 고발 양식을 받고/받거나 그 외 고발 접수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을 "호소자"라고 부르며, 차별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응답자"라고 부릅니다.

행정 심리

담당 수사관이, 호소자가 위법적 차별 행위의 피해자였거나 피해자일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은 행정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정 심리는 법정 재판과 비슷합니다.

행정 판사가 고발 혐의를 바탕으로 심리를 실시합니다. 이 심리에서는, 양측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공식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 중 본인을 대변할 변호사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분과에서 호소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원하실 경우, 본인을 대변할 변호사를 직접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 커미셔너의 명령

심리가 끝나고 나면,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맡은 행정판사가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즉, 호소자와 응답자 중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에 대해 양측 당사자들 및 커미셔너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권장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행정 판사의 권장이라고 부릅니다.

커미셔너는 해당 혐의 내용, 증거 및 담당 행정판사의 권장 명령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커미셔너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